

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5. 5. 16 (월) 평창군수(재무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5. 5. 23(월)
- 다. 상정일자 : 2005. 5. 24(화) 제121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4. 5. 24)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재무과장 김장래)

가. 제안이유

-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편된 부동산 보유세제 관련 조례규정과 자동차세감면 관련조례 규정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종합토지세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재산세에 관한 조문으로 통합
- "주거용건축물" 및 "주거용부동산"을 "주택"으로 수정
- "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"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"로 수정함
-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을 신설함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함경호)

-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명칭이 개정됨에 따른 조문의 정비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통합 흡수됨으로 인하여 종합토지세관련문구를 재산세로 변경하며 전방위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

○ 주요 개정내용으로는

- "종합토지세와 재산세"를 통합하여 재산세로 하고 "주거용건축물과 부동산"을 "주택"으로
"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"을 "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"로 명칭이 각각변경되었고
- 종전까지 cc당 승용차와 승합차의 가액에 100분의 33을 적용하던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
 -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위 조종 자동차에 대하여는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토록 하였고
 - 그 이외의 자동차는 당해년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를 감면하도록 개정하였음
- 향교재단소유재산 중 농지 및 임야에 대해선 "100분의 1"을 "100분의 0.7"로하고
 - 향교 재단소유 대지로서 주거용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해선 "100분의 3"을 "100분의 2로 각각 감면토록 하였음.

○ 이상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의 요지 :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: 평창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.